■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별지 제36호서식] <신설 2022.12.30.>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

※ 진단결과 “예 또는 아니오”에 √표를 합니다.

진단내용	진단결과	
	예	아니오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2. 위원회의 심의대상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다		
3.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연구·논문 등을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4.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5.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6.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의무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7. 위원회의 심의대상자를 진료하거나 변호한 사실이 있다.		
8. 금품수수, 비리 등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다.		
9. 위원회의 심의대상자와 같은 업체 등에 근무하고 있다.		

비 고
※ 진단결과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방병무(지)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